

財務局長	李鍾祿
市民局長	梁石龍
都市整備局長	金潤坤
建設局長	金永圭
난지도事業所長	宋鍾權

###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1984년9월 대홍수 시 망원동에 설치된 수문붕괴로 발생한 수재민에 대해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재민의 범위등) ①이 조례에서 수재민이라함은 1984년9월2일 현재 망원동을 포함한 침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 자와 무단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자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자를 수재민으로본다.

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재민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지분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
제3조(당원동수재민 보상심의위원회) ①이 조례에 의한 수재민에 대한 사실조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, 결정을 위하여 마포구청에 망원동수재민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수재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사, 결정
2. 수재민의 보상금등의 심의, 결정
3. 기타 수재민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

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포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주민대표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.

제4(보상금) 수해보상금은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기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준하되, 소송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대가를 감안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고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다.

제5(보상신청) ①이 조례에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입증서류를 첨부 서

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여야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보상신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수없다.

제6조(심의와 결정)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정서 송달) ①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를 결정 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재신)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청구) ①보상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청구는 지급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아니하면 권리丧失으로 간주한다.

제10조(지급기관) 보상금은 마포구청장이 지급한다.

제11조(환수) ①보상금을 지급 받은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.

1. 사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
2. 과오지급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2조(공고)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마포구청장은 다음사항을 마포구보와 2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
2. 신청인의 자격
3. 신청 기간
4. 구비서류
5. 기타 필요한사항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
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4개월간 시한부로 한다.